

**코로나19 관련,
한시적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지침(20차)**

2024. 4. 26.



**보건복지부
요양보험제도과**

h·well

국민건강보험



I

목적 및 기본원칙

□ 목적

- 코로나-19 관련 감염취약시설인 입소시설에 대한 한시적 방역 강화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 및 종사자 감염예방을 위해 급여제공시 참고할 수 있도록 「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(20차)」 안내

□ 기본원칙

- 동 지침은 코로나-19 집단감염 확산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예외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지침

연번	특례별 구분	주요 내용	적용월	비고
1	한시적 방역지원금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, 단기보호 포함) • (내용)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1인당 월 1,200원 지급	'23.12.~ '24.11.	
2	종사자 '월 기준근무 시간' 인정 특례	• (확진자) 검사일(검체채취일)로부터 5일 이내, 1일 최대 8시간 근무인정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3	코호트 격리 시 특별 지침	• (업무배제자) 최대 15일 범위 내 1일 8시간 근무인정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4	주야간보호 '한시적 코로나19 미이용일 특례비용' 산정 기준	• (대상) 수급자가 확진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함 • (인정기준) 전월 말일까지 공단에 급여일정이(15일 이상) 적기 통보된 일자(월~금요일, 공휴일 제외), 해당 월 최소 1일 실제 이용 수급자 • (인정비용) 격리권고 기간 내에 미이용시 등급별 이용예정 급여비용의 60% 지급 ※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을 공단이 지급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5	방문요양사회복지사 등 배치 가산 인정 특례	• (기준) 방문상담(1회)을 원칙으로 하되, - 사회복지사 또는 수급자가 확진된 경우 유선 상담(월 2회) 대체 ※ 수급자 상담거부는 대체 인정 사유에서 제외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6	시설급여기관 급여비용 산정기준	• 확진 수급자 외박 시 1회 최대 15일 외박비용(50%) 인정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		• 신규 입소기준 완화(검사 횟수 및 격리기간 단축)에 따른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추가산정(최대 2일) - (내용) 입소자(접종여부 불문)가 신규 입소하여 격리기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추가 급여비용 지급 - (기준) 격리실에서 신규 입소자에 대해 급여를 제공한 경우 '수급자 격리 급여비용' 추가 산정(입소시 PCR 검사 1회 및 음성 확인시까지 격리, 입소 전 48시간 이내 PCR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 없이 입소) - (수급자 격리 급여비용) 격리기간 동안 수급자 1인당 40,870원 추가산정(2023년) - (급여비용 추가 산정) 수급자 격리 급여비용 수준의 금액	'24.4.까지	'24.5.부터 종료

7	종사자 검체채취 (PCR검사) 지원금 지급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 포함) • (내용) 기관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 지급 • (기준) 시설 내 의료·간호인력이 종사자 전원에 대해 PCR 검체 채취 시 지원금액 산정	'24.4. 까지	'24.5. 부터 종료
8	코로나19 진단검사 '월기준근무시간' 인정 특례	•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, 단기보호 포함)에 근무하는 종사자 등 • (내용) 근무시간에 진단검사에 참여한 경우 1일 8시간 범위에서 실제 소요된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(코로나 검사코드)	'24.4. 까지	'24.5. 부터 종료

Ⅱ

한시적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

1. 한시적 방역지원금

- (대상) 입소형 시설(주야간·단기보호 기관 포함)
- (내용)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, 자가진단 키트, 소독제 구매 등 방역 활동 비용 발생에 대한 지원
- (기준)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
 - ※ 해당 월 병설기관으로 이동한 경우 급여제공일이 빠른 1개소만 지급, 미이용 또는 외박비용만 청구할 경우 제외
- (지급금액) 수급자 1인당 1,200원/월
- (적용기간) '23.12.1. ~ '24.11.30.
- (청구기간) 급여제공월 기준 3개월 이내까지 한시적으로 청구 가능
- (작성서류) 해당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수급자 명단(총 명수, 입소일, 외박일 등 급여제공여부 명시)을 반드시 5년간 보관